

서정대학교 제66차 대학평의위원회

□ 심의·의결 안건 : 총 1건

안건1.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심의의 건

- 근거 1. 서정대학교 규정집 대학평의위원회 운영 규정
- 2. 제66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 개최 승인의 건



서정대학교
SEOJEONG UNIVERSITY

< 회의개요 >

□ 회 의 명 : 제66차 대학평의원회

□ 회의일시 : 2022.11.22.(화) 15:00

□ 회의장소 : 본관 3층 회의실

□ 참석의원 : 9 인

□ 회의안건 :

안건1.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심의의 건

1. 회의 경과

□ 회의 개최

- 서정대학교 규정집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2조(기능) 제2호에 따라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 바, 대학평의원회를 소관하는 서정대학교 기획조정실에서는회의 개시 전 대학 홈페이지 내 게시판에 사전 공지하였으며, 의원들에게 회의 안건 및 회의자료 송부하여 회의 내용 안내.
- 의장 포함 총원 12인 중 9인 출석으로 회의 성원이 되었음.

□ 의원 소개

- 대학 평의원회 운영규정 제4조(임기) 및 대학평의원회 의원 위촉에 관한 건에 의거하여 의원 구성됨.

직명	성명	구성단위
의장	양 령	교원
부의장	현 렬	
의원	정 정	
의원	김 재	
의원	김 우	직원
의원	송 정	
의원	신 룡	
의원	김 성	
의원	안 준	외부
의원	윤 한	
의원	양 승	
의원	이 호	
		학생

□ 안전 심의 및 의결

● 안전 1 :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심의의 건

○ 주요의견

-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제2조(기능)에 의거,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의 제·개정 사유의 발생 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음.
- 금번 안전으로 상정된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은 2022.10.26.(수)부터 10일간 공람기간을 거쳐 각 부서 및 센터 등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금번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의 개정 사유는 입학정원 변경, 학과명 변경, 학과 신설, 전문학사학위의 중별 등의 조항이 해당됨.
- 이는 대학 내 여러 국고 사업단의 현황을 학칙에 최신화 하여 반영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최신화 하여 학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함.
- 학칙 시행세칙의 경우, 용어의 순화 등을 사유로 개정이 이루어 질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회의자료를 통해 의원들에게 배부함.
- 절차를 거친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은 2022.12.1. 자 시행될 예정.

□ 회의 결과

▶ 심의안건

1)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심의의 건

- 서정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서는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참석인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함(심의)

성명	가	부	결의일	참조의견
양영	○		2022.11.22.(화)	
현렬	○		2022.11.22.(화)	
정정	○		2022.11.22.(화)	
김재	○		2022.11.22.(화)	
신록	○		2022.11.22.(화)	
송정	○		2022.11.22.(화)	
김우	○		2022.11.22.(화)	
김성				
안준	○		2022.11.22.(화)	
윤한				
양승				
이호	○		2022.11.22.(화)	

2. 제66차 대학평의위원회 심의 · 의결서

※ 해당안건에 대한 가, 부 여부에 ○표 해주십시오.

【안건 1】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심의의 건

가	부	비고
○		

위와 같이 심의 · 의결함

2022년 11월 22일

대학평의위원회 의원

이성민 (서명/인)

2. 제66차 대학평의위원회 심의 · 의결서

※ 해당안건에 대한 가, 부 여부에 ○표 해주십시오.

【안건 1】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심의의 건

가	부	비고
○		

위와 같이 심의 · 의결함

2022년 11월 22일

대학평의위원회 의원

정 ■ 령

(서명인)

2. 제66차 대학평의위원회 심의 · 의결서

※ 해당안건에 대한 가, 부 여부에 ○표 해주십시오.

【안건 1】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심의의 건

가	부	비고
○		

위와 같이 심의 · 의결함

2022년 11월 22일

대학평의위원회 의원

20  20 (서명/인) 

2. 제66차 대학평의위원회 심의 · 의결서

※ 해당안건에 대한 가, 부 여부에 O표 해주십시오.

【안건 1】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심의의 건

가	부	비고
0		학칙 82조 검토 필요.

위와 같이 심의 · 의결함

2022년 11월 22일

대학평의위원회 의원

김 [redacted] 지

(서 [redacted] 인)

2. 제66차 대학평의위원회 심의 · 의결서

※ 해당안건에 대한 가, 부 여부에 O표 해주십시오.

【안건 1】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심의의 건

가	부	비고
☒		

위와 같이 심의 · 의결함

2022년 11월 22일

대학평의위원회 의원

신  


(서명/인)

2. 제66차 대학평의위원회 심의 · 의결서

※ 해당안건에 대한 가, 부 여부에 O표 해주십시오.

【안건 1】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심의의 건

가	부	비고
9		

위와 같이 심의 · 의결함

2022년 11월 22일

대학평의위원회 의원

송 정

(서명/인)

2. 제66차 대학평의위원회 심의 · 의결서

※ 해당안건에 대한 가, 부 여부에 O표 해주십시오.

【안건 1】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심의의 건

가	부	비고
O		

위와 같이 심의 · 의결함

2022년 11월 22일

대학평의위원회 의원

김

우

(서명/인)

2. 제66차 대학평의위원회 심의 · 의결서

※ 해당안건에 대한 가, 부 여부에 ○표 해주십시오.

【안건 1】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심의의 건

가	부	비고
○		

위와 같이 심의 · 의결함

2022년 11월 22일

대학평의위원회 의원

안 ■ 존

(서명/인)

2. 제66차 대학평의위원회 심의 · 의결서

※ 해당안건에 대한 가, 부 여부에 O표 해주십시오.

【안건 1】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심의의 건

가	부	비고
O		

위와 같이 심의 · 의결함

2022년 11월 22일

대학평의위원회 위원

이  (서명/인)

3. 회의 자료

【안건 1】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심의의 건

[회의자료1]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 관련 절차 서류 일체



서 정 대 학 교



수신자 수신처참조
(경유)

제 목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등 규정 개정 공람 공고

1. 관련 근거 : 학칙 제16장 학칙 제·개정절차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등 규정 개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람 공고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공람 공고 1부.
2. 개정이유 및 주요개정 내용 1부.
 3. 신구대조표(학칙) 1부.
 4. 신구대조표(시행세칙) 1부.
 5. 학칙개정안 의견서 1부. 끝.

서 정 대 학 교 총 장

수신처: 각 학부(과)장 외 1

국제학사과기안10/26 입학학사처전결10/26

장 박정화 장 김행영

협조자

수신 국제교류팀장 전결10/27
박인호

시행 입학학사처-2022-1324 (2022.10.26) 접수 입학학사처-2022-1332 (2022.10.27)
(우) 11429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서정로 27 www.seojeong.ac.kr
Tel /Fax /E-mail jhpark@seojeong.ac.kr / 공개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공람 공고

서정대학교 입학학사처는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열람하시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기간 내에 의견 제시가 없는 경우 개정된 규정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공포하고 2022년 12월 1일자로 시행합니다.

- 다 음 -

1. 대 상 :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2. 공람기간 : 공람일로부터 10일간
3. 관련부서 : 각 학과 및 교수협의회
4. 의견제출 : 입학학사처 담당 김정섭

2022년 10월 26일

서정대학교 입학학사처장

붙임 2.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등 규정 개정 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

1. 개정 이유

1) 학칙

- ▶ 입학정원 변경
- ▶ 학과명 변경
- ▶ 학과신설
- ▶ 전문학사학위의 종별

2. 주요 개정내용

구분	조항	주요 개정내용
학칙	제5조의2(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전공심화과정 학과명칭 변경, 입학정원 변경, 학과 신설 내용 반영 및 개정일 삽입
	제5조의5	전문기술석사 과정의 설치에 따른 학칙 근거 마련
	제6조(교직원)	특임교원에 관한 제도 운영을 위한 학칙 근거
	제8조(조직)	조직 중 산학협력처 추가
	제10조(재학연한)	외국인 불법 체류, 중도 탈락 등에 따른 재학 연한의 제한 필요
	제12조(학기)	성인학습자, HiVE, LiFE 등 각 사업에 따른 수업운영 방식 및 학제의 다양화 반영
	제17조(입학자격)	전공심화과정의 근거 명시 및 제22조의2항의 성인학습자 타과 입학의 근거
	제19조의1(입학전형)	전공심화 및 위탁 과정의 입학전형 근거
	제22조의1(입학허가)	입학전형 절차의 명확화
	제22조의2(성인학습자 과정)	유관 조항으로 이동
	제23조(입학취소)	입학취소 요건의 명확화
	제24조(산업체 위탁교육)	용어 통일
	제32조의1(교육과정)	조항 내용의 명확화
	제32조의3(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조항 내용의 명확화
	제32조의4(성인학습자 교육과정)	제22조의2항 삭제 후 신설
	제32조의5(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공동운영을 위한 협약 근거
	제34조(학점인정)	학점 인정에 관한 근거의 구체화 및 명확화
	제35조의1(수업)	미래 사회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에 관한 근거 마련
	제35조의2(성인학습자 과정 수업)	조문변경이동에 따른 내용의 명확화
	제36조(집중수업)	집중수업 개설 조건의 명확화
	제37조(교수시간)	교원의 교수시간 근거 마련
	제41조(시험 및 평가)	시험 및 평가에 관한 근거의 명확화

구분	조항	주요 개정내용
학칙	제43조(성적)	용어의 순화
	제44조(성적의 취소)	성적취소 근거의 구체화
	제46조(졸업)	졸업인증 과정 및 졸업 조건의 명확화
	제48조의1(학위수여)	학위수여에 관한 근거의 구체화
	제48조의2(복수(공동)학위수여)	외국 및 타 대학과의 공동(복수) 학위 수여에 관한 근거
	제55조(학점은행제)	조문 항목의 순화 및 용어 통일
	제65조(성희롱 예방 및 성차별 금지)	양성평등기본법 및 학칙 명시 요건의 구체화
	제68조2(납입금의 반환)	납입금 반환의 근거 명확화
	제71조의2(대학평의위원회)	대학평의위원회 기능의 근거
	제79조의1(부속기관)	대학 내 부속기관 변경에 따른 정리
	제79조의2(부설기관)	평생교육원의 부설기관으로의 변경
	제80조(산학협력단)	부설기관 구분에 따른 명칭 변경
	제81조(학교기업)	지나친 세부 항목의 간략화
	제83조(장애학생 및 소수집단 학생지원)	장애학생과 소수집단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근거
	제1조(시행일)	학칙 시행세칙 제1조(시행일)에서 이동
	제1조(시행일)	부칙 시행일 명시
	조문 표기 방식 통일	제19조의1(입학전형), 제22조의1(입학허가), 제35조의1(수업), 제35조의2, 제48조의1(학위수여), 제71조의1, 제79조의1
	대학 명칭 표기 방식 통일	제1조(목적), 제2조(교육이념), 제3조(명칭), 제4조(위치),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제5조의2(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제5조의4(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 제6조(교직원), 제8조(조직), 제9조(수업연한), 제32조의1(교육과정), 제52조(공개강좌), 제73조(제위원회), 제76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79조의1(부속기관), 제79조의2(부설기관), 제82조(자체평가)
	용어 표기 방식 통일	제32조의1(교육과정), 제32조2(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날짜 표기 방식 통일	제5조의2(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시행세칙	제40조(전과 및 편입학생의 학점 인정)	용어의 순화
	제1조(시행일)	학칙으로 이동 변경
	제1조(시행일)	학칙 개정 기준일 공시

신 · 구조문 대비표

규정명: 학칙

조 문	원 행	개 정(안)	비 고																																																																																																													
	본 대학교에 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2.12.4.><개정 2014.2.26, 2015.8.20, 2016.2.29, 2017.4.27, 2017.9.1., 2018.7.10., 2019.10.1., 2020.11.23, 2022.3.1., 2022.4.15.>	본 대학에 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2.12.4.><개정 2014.2.26, 2015.8.20, 2016.2.29, 2017.4.27, 2017.9.1., 2018.7.10., 2019.10.1., 2020.11.23, 2022.3.1., 2022.4.15, 2022.12.1.>																																																																																																														
제5조의2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의 설 치학과 및 입학정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계열</th><th>학과명</th><th>입학정원 주간</th><th>야간</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인문 사회 계열</td><td>유아교육학과</td><td></td><td>45</td></tr> <tr> <td>상대어동정소년학과</td><td></td><td>37</td></tr> <tr> <td>사회복지학과</td><td></td><td>80</td></tr> <tr> <td>호텔항공관광학과</td><td>10</td><td></td></tr> <tr> <td rowspan="3">자연 과학 계열</td><td>경영학과</td><td>10</td><td></td></tr> <tr> <td>글로벌한국어복지 학과</td><td>10</td><td></td></tr> <tr> <td>호텔의식조리학과</td><td>10</td><td>25</td></tr> <tr> <td rowspan="3">공학 계열</td><td>한려동물학과</td><td></td><td>12</td></tr> <tr> <td>뷰티아트학과</td><td></td><td>10</td></tr> <tr> <td>제일강신원조학과</td><td>10</td><td></td></tr> <tr> <td rowspan="3">문학 계열</td><td>자문자학과</td><td>20</td><td></td></tr> <tr> <td>소방안전관리학과</td><td>20</td><td></td></tr> <tr> <td>스마트자동차학과</td><td>10</td><td></td></tr> <tr> <td colspan="2">소계</td><td>50</td><td>274</td></tr> </tbody> </table>	계열	학과명	입학정원 주간	야간	인문 사회 계열	유아교육학과		45	상대어동정소년학과		37	사회복지학과		80	호텔항공관광학과	10		자연 과학 계열	경영학과	10		글로벌한국어복지 학과	10		호텔의식조리학과	10	25	공학 계열	한려동물학과		12	뷰티아트학과		10	제일강신원조학과	10		문학 계열	자문자학과	20		소방안전관리학과	20		스마트자동차학과	10		소계		50	274	<table border="1"> <thead> <tr> <th>계열</th><th>학과명</th><th>입학정원 주간</th><th>야간</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인문 사회 계열</td><td>유아교육학과</td><td></td><td>40</td></tr> <tr> <td>폴리케어복지학과</td><td></td><td>30</td></tr> <tr> <td>사회복지학과</td><td></td><td>65</td></tr> <tr> <td>호텔항공관광학과</td><td>10</td><td></td></tr> <tr> <td rowspan="3">자연 과학 계열</td><td>경영학과</td><td>10</td><td></td></tr> <tr> <td>글로벌한국어복지 학과</td><td>10</td><td></td></tr> <tr> <td>사회복지상봉학과</td><td>10</td><td>25</td></tr> <tr> <td rowspan="3">공학 계열</td><td>호텔의식조리학과</td><td>10</td><td>12</td></tr> <tr> <td>한려동물학과</td><td></td><td>10</td></tr> <tr> <td>뷰티아트학과</td><td></td><td>10</td></tr> <tr> <td rowspan="3">문학 계열</td><td>제일강신원조학과</td><td>10</td><td></td></tr> <tr> <td>자문자학과</td><td></td><td>17</td></tr> <tr> <td>소방안전관리학과</td><td>15</td><td></td></tr> <tr> <td rowspan="2">스마트자동차학과</td><td>스마트자동차학과</td><td>15</td><td></td></tr> <tr> <td>소계</td><td>65</td><td>209</td></tr> <tr> <td colspan="2">입학정원 합계</td><td>274</td><td></td></tr> </tbody> </table>	계열	학과명	입학정원 주간	야간	인문 사회 계열	유아교육학과		40	폴리케어복지학과		30	사회복지학과		65	호텔항공관광학과	10		자연 과학 계열	경영학과	10		글로벌한국어복지 학과	10		사회복지상봉학과	10	25	공학 계열	호텔의식조리학과	10	12	한려동물학과		10	뷰티아트학과		10	문학 계열	제일강신원조학과	10		자문자학과		17	소방안전관리학과	15		스마트자동차학과	스마트자동차학과	15		소계	65	209	입학정원 합계		274		전공심화과정 학과명칭 변경, 입학정원 변경, 학과 신설 내용 반영 및 개정일 삼일
계열	학과명	입학정원 주간	야간																																																																																																													
인문 사회 계열	유아교육학과		45																																																																																																													
	상대어동정소년학과		37																																																																																																													
	사회복지학과		80																																																																																																													
	호텔항공관광학과	10																																																																																																														
자연 과학 계열	경영학과	10																																																																																																														
	글로벌한국어복지 학과	10																																																																																																														
	호텔의식조리학과	10	25																																																																																																													
공학 계열	한려동물학과		12																																																																																																													
	뷰티아트학과		10																																																																																																													
	제일강신원조학과	10																																																																																																														
문학 계열	자문자학과	20																																																																																																														
	소방안전관리학과	20																																																																																																														
	스마트자동차학과	10																																																																																																														
소계		50	274																																																																																																													
계열	학과명	입학정원 주간	야간																																																																																																													
인문 사회 계열	유아교육학과		40																																																																																																													
	폴리케어복지학과		30																																																																																																													
	사회복지학과		65																																																																																																													
	호텔항공관광학과	10																																																																																																														
자연 과학 계열	경영학과	10																																																																																																														
	글로벌한국어복지 학과	10																																																																																																														
	사회복지상봉학과	10	25																																																																																																													
공학 계열	호텔의식조리학과	10	12																																																																																																													
	한려동물학과		10																																																																																																													
	뷰티아트학과		10																																																																																																													
문학 계열	제일강신원조학과	10																																																																																																														
	자문자학과		17																																																																																																													
	소방안전관리학과	15																																																																																																														
스마트자동차학과	스마트자동차학과	15																																																																																																														
	소계	65	209																																																																																																													
입학정원 합계		274																																																																																																														
제5조의5		제5조의5(전문기술석사 과정 설치) ① 본 대학에 전문기술 분야의 고숙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기술석사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기술석사 과정의 학칙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2.12.1.>	전문기술석사 과정의 설치에 따른 학칙 근거 마련																																																																																																													
제6조(교직원)	③총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임교원, 초빙교원, 강사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9.10.1.>	③총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임교원, 초빙교원, 특임교원, 강사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2.12.1.>	특임교원 추가																																																																																																													
	3. 강사 :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자.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06.3.1.,	3. 특임교원 : 국가 및 연구기관, 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공적 또는 실무능력이 뛰어난 자로 본교 발전을 위하여 강의 또는 총장이 부여한 특별임무 등을 담당하	특임교원에 관한 제도 운영을 위한 학칙 근거																																																																																																													

	2019.10.1.>	는 교원으로 학(부)과장 및 각 부처장의 추천을 받아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22.12.1.> 4. 강사 :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자.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06.3.1., 2019.10.1.>	는 교원으로 학(부)과장 및 각 부처장의 추천을 받아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22.12.1.> 4. 강사 :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자.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06.3.1., 2019.10.1.>
제 8 조 (조 직)	①본 대학교에는 교무처, 학생복지처, 사무처, 기획조정실, 입학학사처, 국제교류처, 평생직업교육처, 대외협력처 등을 두며, 각 처에는 소속이 변경될 수 있다. <개정 2004.3.25., 2006.3.1., 2011.6.7., 2012.2.10., 2014.2.26., 2016.2.29., 2017.4.27., 2019.10.1., 2020.11.23., 2022.3.1.>	①본 대학교에는 교무처, 학생복지처, 사무처, 기획조정실, 입학학사처, 국제교류처, 평생직업교육처, 대외협력처 등을 두며, 각 처에는 소속이 변경될 수 있다. <개정 2004.3.25., 2006.3.1., 2011.6.7., 2012.2.10., 2014.2.26., 2016.2.29., 2017.4.27., 2019.10.1., 2020.11.23., 2022.3.1.>	조직 중 신학협력처 추가
제 10 조 (재 학 연 한)	①<개정 2003.8.27.> 학제 ②<개정 2003.8.27.> 학제 ③<개정 2003.8.27.> 학제 ④<개정 2003.8.27.> 학제 ⑤<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⑥<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⑦<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⑧<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⑨<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⑩<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⑪<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⑫<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⑬<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⑭<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⑮<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⑯<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⑰<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⑱<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⑲<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⑳<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㉑<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㉒<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㉓<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㉔<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㉕<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㉖<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㉗<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㉘<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㉙<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㉚<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㉛<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㉜<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㉝<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㉞<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㉟<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㊱<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㊲<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㊳<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㊴<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㊵<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㊶<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㊷<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㊸<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㊹<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㊺<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㊻<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㊼<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㊽<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㊾<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㊿<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①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신설 2006.3.1.> ②<개정 2003.8.27.> 학제 ③<개정 2003.8.27.> 학제 ④<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⑤<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⑥<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⑦<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⑧<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⑨<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⑩<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⑪<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⑫<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⑬<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⑭<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⑮<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⑯<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⑰<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⑱<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⑲<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⑳<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㉑<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㉒<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㉓<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㉔<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㉕<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㉖<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㉗<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㉘<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㉙<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㉚<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㉛<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㉜<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㉝<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㉞<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㉟<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㊱<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㊲<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㊳<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㊴<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㊵<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㊶<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㊷<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㊸<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㊹<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㊺<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㊻<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㊼<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㊽<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㊾<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㊿<개정 2003.8.27., 2004.3.25.> 학제	외국인 불법 체류, 중도 탈락 등에 따른 재학 연한의 제한 필요
제 12 조 (학 기)	4. 각 학기는 집중수업을 위한 모듈식 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모듈식 수업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2.12.1.>	4. 각 학기는 집중수업을 위한 모듈식 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모듈식 수업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2.12.1.>	정인학습자, HIVE, LIFE 등 각 사업에 따른 수업운영 방식 및 학제의 다양화 반영

		정한다.<신설 2022.12.1.> 제17조(입학자격) ①전문학사학위 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전문공학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③평생교육채제 지원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 선정학과 및 이외의 학과에서도 성인학습자를 모집할 수 있다.<신설 2020.11.2.> <개정 2022.4.15., 2022.12.1.>	전문공학과정의 근거 명시 및 제22조의2항의 성인학습자 타과 입학의 근거
제17조(입학자격)	제1학년제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전문 이동
제19조의1(입학전형)	신입학전형은 매 학년도 관련기관에서 정하는 전문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 중 총장이 선발방법을 병합한 전형에 의해 선발한다. <개정 2008.8.22.> 1. 출신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2.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 3. 대학별고사 4. 면접고사 5. 실기고사 6.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①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매 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산업체위탁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매 학년도 전문대학 산업체위탁 시행계획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③ 전문공학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매 학년도 전문대학 학사학위전문공학과정 시행계획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2.12.1.> ④의국인 유학생은 유학생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신설 2020.11.23., 개정 2022.12.1.> ⑤산업체 위탁과정은 위탁교육심의위원회와 해당학과 교수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신설 2022.12.1.>	전문심화 및 위탁 과정의 입학전형 근거
제22조의1(입학허가)	③의국인 유학생 신입학은 국제교류처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신설 2020.11.23.>		입학전형 절차의 명확화
제22조의2(성인학습자)	①관계기관의 신청에 따라 성인학습자 과정을 운영한다.<신설 2020.11.23.><개정 2022.4.15.> ②선정된 학과 이외의 학과에서도	조항 삭제 ①제32조의4항으로 이동 ②제17조3항으로 이동	유관 조항으로 이동

	LIFE사업에서 제시하는 입학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을 모집하여 성인학습자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입학취소)	1. 제출한 증명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2. 이중학적을 가진 자 3. 입학 모집요강에 정한 입학취소 요건 해당자	1. 제출한 증명서류에 허위사실 등 부정된 방법으로 입학한 자 2. 이중학적을 가진 자 3.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4.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 정하는 입학지원 방법을 위반한 자 5. 기타 입학모집요강 등에서 총장이 정한 입학취소 요건 해당자<개정 2022.12.1.>	입학취소 요건의 명확화
제24조(산업체 위탁교육)	①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지침에 따른다.	①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지침에 따른다.	용어 통일
제32조의1(교육과정)	3. 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3. 두 개 이상의 전공을 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조항 내용의 명확화
제32조의3(사회맞춤형 교육과정)	②사회맞춤형 학과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사회맞춤형 학과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의4(성인학습자 교육과정)	①평생학습사회 구현과 성인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하 “성인학습자 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성인학습자 교육과정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12.1.>	제32조의4(성인학습자 교육과정) ①평생학습사회 구현과 성인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하 “성인학습자 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성인학습자 교육과정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12.1.>	제22조의2항 삭제 후 신설
제32조의5(국내대학 교육과정 공동운영)	제32조의5(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고등	제32조의5(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고등	외국 대학과의 교육과정

학 및 외 국대학과 의 교육 과정 공 등운영)		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학위과정을 두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공동운영을 위한 협약 근거
		②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12.1>	
		①국내·외의 타 대학 간에 학점교류에 관한 협약 및 해외의 인턴십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본 교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 학생은 이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2.12.1>	
		③진공심화과정 1년 과정 입학생들은 112학점을, 2년 과정 입학생들은 72학점을 인정한다. 단, 입학시 인정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학점은 졸업시까지 반드시 부족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삭제 <2004.3.25><개정 2012.12.4., 2020.11.23., 2022.3.1>	
		④본 대학 재학생이 입학 전 및 후 본 대학, 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수행한 직무경험과 학습경험, 국가기관 등이 시행한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면 최대 18학점 범위 내에서 특정한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4.13><개정 2016.2.29., 2022.12.1>	
제 34 조 (학 점 인정)		④서경대학 재학생이 K-MOOCs, 본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학점은 행정 과정으로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6.2.29., 2021.5.17>	학점 인정에 관한 근거의 구체화 및 명확화
		⑤병역법 제73조 2항에 따라 임영 또는 군 복무로 휴학 중인 자가 방송·통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 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⑤병역법 제73조 2항에 따라 임영 또는 군 복무로 휴학 중인 자가 방송·통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 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제 35 조 의 1(수업)	제 35 조 의 1(수업) ①수업은 주간, 야간, 전일제, 주말, 방 송·통신, 현장실습학기제 등의 방 법에 의하며, 세부 운영방법은 별도 로 정한다.<개정 2015.4.13., 2017.9.1., 2019.10.1., 2022.3.1>	취득한 경우 1학기당 6학점, 1년에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8.1.30><개정 2016.2.29>	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1학기당 6 학점, 1년에 12학점 이내에서 인정 할 수 있다. 또한 군 복무 중 취득 한 학점도 1학기당 6학점, 1년에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 다.<신설 2008.1.30><개정 2016.2.29., 2022.12.1>
제 35 조 의 2(성인학 습자 파 정 수업)	학칙 제22조의2(성인학습자 과정)의 학생들도 학칙 제35조(수업)의 내용 을 준수한다.<신설 2020.11.23.><개 정 2021.5.17>	⑥협약 기관 또는 산업체에서 운영하 는 인성교육, 사회봉사, 창업강좌, 직업기초능력 관련 교육에 참여하여 학점 인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학점 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5.4.13><개정 2016.2.29>	⑥편입학, 재입학, 전공심화과정 입 학생의 학점 및 성적에 관한 사항 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2.12.1>
제 36 조 (집 중수업)	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절학기 등은 단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0.01., 2022.12.1>	⑧성인학습자가 입학 전 기관, 연구기 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수행한 직 무경험과 학습경험 등이 평가인정을 통해 입증되면 최대 18학점 범위 내 에서 특정한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 할 수 있다. <신설 2016.2.29>	⑧삭제
제 36 조 (집 중수업)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전일 제수업, 주말수업, 원격수업(방송 통신 수업 및 사이버 수업 포함), 현장실습수업, 온·오프라인 혼합방 식(블렌디드·플립·서비스 러닝) 등 혁신적인 교육방식을 도입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4.13., 2019.9.1., 2019.10.1., 2022.3.1., 2022.12.1>	⑨삭제	미래 사회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에 관한 근거 마련
제 36 조 (집 중수업)	학칙 제32조4(성인학습자 과정)의 학생들도 학칙 제35조(수업)의 내 용에 따른다.<신설 2020.11.23> <개정 2021.5.17> <조문변경이동 2022.12.1>	⑩조문변경이동 2022.12.1>	조문변경이동 2022.12.1>

	2022.3.1.>	2019.10.01., 2022.3.1., 2022.12.1.> ②진입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12시간으로 한다. 다만, 보직교원·강의 중점교원·겸임교원·특임교원·초빙교원·산학협력중점교원·사회맞춤형 체임교원 등의 책임시간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2.2.10., 2015.4.13., 2022.3.1., 2022.12.1.>	교원의 교수시간 근거 마련
제 37 조 (교수시간)	②시험 및 평가는 강의계획서에 명시한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6.2.29.>	②시험 및 평가는 주·객관식 시험을 병용한 필답고사, 실기, 실습, 과제물 작성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6.2.29., 2022.12.1.>	
제 41 조 (시험 및 평가)	③각 교과목 총 수업 시간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당해 교과목의 학점을 미 취득(F)으로 처리한다. 다만, 원 정실습학기제 등 정상 수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7.4.27., 2022.3.1.>	③각 교과목 총 수업 시간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당해 교과목의 학점을 미 취득(F)으로 처리한다. 다만, 재학 중 취업한 자 등에 대하여는 예외로 적용한다.<개정 2017.4.27., 2022.12.1.>	시험 및 평가에 관한 근거의 명확화
제 43 조 (성적)	②교과목 성적이 D+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성적 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수 없는 교과목의 경우에는 P를 급제로 한다.<개정 2016.9.1.>	②교과목 성적이 D+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성적 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수 없는 교과목의 경우에는 P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개정 2016.9.1., 2022.12.1.>	용어의 순화
제 44 조 (성적의 취소)		5. 파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성적 <신설 2022.12.1.>	성적취소 근거의 구체화
제 46 조 (졸업)	①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2.3항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는 졸업자격을 부여하고 진문학사과정은 별지서식 제1호의 학위증서를 수여하고, 학사과정 및 전공심화과정은 별지서식 제3호의 학위증서를 수여한다.<개정 2008.8.22., 2012.12.4., 2017.4.27.>	①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2항, 제3항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는 졸업자격을 부여하고 진문학사과정은 별지서식 제1호의 학위증서를 수여하고, 학사과정 및 전공심화과정은 별지서식 제3호의 학위증서를 수여한다.<개정 2008.8.22., 2012.12.4., 2017.4.27., 2022.12.1.>	졸업인증 과정 및 졸업 조건의 명확화
	②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은 2년제 72학점 이상, 3년제 112학점 이상, 4년제 132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②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은 2년제 72학점 이상, 3년제 112학점 이상, 4년제 132학점 이상 취득하여	

	하며 전공심화과정은 132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04.3.25., 2012.12.4., 2016.2.29., 2020.2.14., 2020.11.23., 2022.3.1.>	하며 전공심화과정은 132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04.3.25., 2012.12.4., 2016.2.29., 2020.2.14., 2020.11.23., 2022.3.1.>	여야 하며 본 대학의 전공심화과정 1년제 학과는 20학점, 2년제 학과는 6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04.3.25., 2012.12.4., 2016.2.29., 2020.2.14., 2020.11.23., 2022.3.1., 2022.12.1.>
	③학부(과)는 졸업인증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하며 이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졸업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졸업인증 기준 설정 및 시행여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부(과)별로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거쳐 실시한다. 삭제 <2004.3.25., 2017.4.27.>	③학부(과)는 졸업인증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하며 이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졸업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졸업인증 기준 설정 및 시행여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부(과)별로 정하여 실시한다. 삭제 <2004.3.25., 2017.4.27.>	③학부(과)는 필요한 경우 졸업인증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하며 이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졸업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졸업인증 기준 설정 및 시행여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부(과)별로 정하여 실시한다. 삭제 <2004.3.25., 2017.4.27.>
		본 대학교에서 졸업이 인정된 자는 진문학사과정은 별지서식 제1-1호에 의하여 별표1-1에 해당하는 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때 사학위를 수여한다. 이때 별지서식 제1-2호에 의하여 별표1-2에 해당하는 다진공, 융합진공을 표시할 수 있다. 학사과정 및 전공심화과정은 별지서식 제3호에 의하여 별표2에 해당하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12.2.10., 2012.12.4., 2016.2.29., 2022.3.1.>	①총장이 정한 학과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제46조 제2항 및 제3항의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의 진문학사과정은 별지서식 제1-1호에 의하여 별표1-1에 해당하는 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때 별지서식 제1-2호에 의하여 별표1-2에 해당하는 다진공, 융합진공을 표시할 수 있다. 학사과정 및 전공심화과정은 별지서식 제3호에 의하여 별표2에 해당하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12.2.10., 2012.12.4., 2016.2.29., 2022.12.1.>
제 48 조 의 1 (학위 수여)			②전문학사 및 학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22.12.1.>
제 48 조 의 2 (복수 (공통) 학위 수여)			제48조의2(복수(공통)학위수여) ① 제32조5에 의거하여 협약에 의한 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복수(공통)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복수(공통)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2.12.1.>
제 48 조 의 2 (복수 (공통) 학위 수여)			외국 및 타 대학과의 공동(복수) 학위 수여에 관한 근거

제55조(학 점은 행 제)	②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 정[대통령령 제26591호]을 준수한다. <개정 2016.9.1.>	②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가인 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 령령 제26591호]에 따른다.<개정 2016.9.1., 2022.9.1.>	조문 항목의 순화 및 용어 통일
제65조(성 회통예 방및성 차별 지)	제65조(성회통예방)에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본 대 학의 구성원을 성회통예방 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 기 위한 조치와 성회통예 방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 에게 이 대로 정한다.<개정 2012.2.10.>	제65조(성회통예방)에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본 대 학의 구성원을 성회통예방 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 기 위한 조치와 성회통예방 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 에게 이 대로 정한다. <개 정 2022.12.1.>	양성평등기본법 및 학칙 명시 요건의 구체화
제68조2 (납입금 의 반환)	②전항의 반환금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개정 2008.8.22., 2011.6.7.>	②제1항의 각 호의 반환금은 대학등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 정 2008.8.22., 2011.6.7., 2022.12.1.>	납입금 반환의 근거 명확화
제71조의 2(대학평 의위원회)		①본 대학의 중요사항을 심의·자문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를 둔다. ②대학평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 른다.<신설 2022.12.1.>	대학평의회 기능의 근거
제79조의 1(부속기 관)	①본 대학에는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 을 둔다.<개정 2012.2.10., 2016.2.29.> 1. 신문방송국 2. 사채 <2016.2.29.> 3. 도서관 4. 지역발전연구소 5. 정보전산센터 6. 홍보지원센터 7. 평생교육원 8. 군사회연구소	①본 대학에는 다음 각 호의 부속기 관을 둔다.<개정 2012.2.10., 2016.2.29.> 1. 신문방송국 2. 사채 <2016.2.29.> 3. 도서관 4. 지역발전연구소 5. 정보전산센터 6. 홍보지원센터 7. 평생교육원 8. 군사회연구소	대학 내 부속기관 변경에 따른 정리
제79조의	①본 대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부설기 관을 둔다.<개정 2022.4.15.>	①본 대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부설기 관을 둔다.<개정 2022.4.15.>	평생교육원의 부설기관으로의

2(부설기 관)	1. 한국어교육원 2. 다문화원 3. 자동화전문기술교육원 4. 세종학당 지원센터	1. 한국어교육원 2. 다문화원 3. 자동화전문기술교육원 4. 세종학당 지원센터 5. 평생교육원 <신설 2022.12.1.>	변경
제80조(산 학협력 단)	제80조(산학협력차·단) ①산업교육진 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학협력차·단을 둔다.<개정 2022.3.1.> ②산학협력차·단에는 산학협력지원 과, 사업지원과, 기업협업센터(ICC), 일학습병행센터를 둔다.<개정 2006.3.1., 2012.2.10., 2014.2.26., 2022.3.1., 2022.12.1.> ③산학협력차·단의 단장은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06.3.1., 2022.3.1.> ④산학협력차·단에 대한 자세한 사 항은 산학협력단 법인정관에 따른다. <개정 2006.3.1., 2022.3.1., 2022.12.1.> ⑤산학협력차·단은 산업체 경력자로 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및 연구, 창업·취업 지원 활동 등을 증점 추 진하는 산학협력 증점교수를 둘 수 있다.<신설 2012.2.10.><개정 2022.3.1.>	제80조(산학협력단) ①산업교육진 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산학협력단을 둔다.<개정 2022.3.1., 2022.12.1.> ②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지원과, 사업지원과, 기업협업센터(ICC), 일학습병행센터를 둔다.<개정 2006.3.1., 2012.2.10., 2014.2.26., 2022.3.1., 2022.12.1.> ③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총장이 임 명한다.<개정 2006.3.1., 2022.3.1., 2022.12.1.> ④산학협력단에 대한 자세한 사항 은 산학협력단 법인정관에 따른다. <개정 2006.3.1., 2022.3.1., 2022.12.1.> ⑤산학협력단은 산업체 경력자로 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및 연구, 창업·취업 지원 활동 등을 증점 추 진하는 산학협력 증점교수를 둘 수 있다.<신설 2012.2.10.><개정 2022.3.1., 2022.12.1.>	부설기관 구분에 따른 명칭 변경
제81조(학 교기업)	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 한 법률에 의거 학교기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 기업은 아래와 같 다.<개정 2015.6.1., 2020.2.14., 2020.11.23., 2021.5.17.> 1. 가.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호 국로 1336, 탑빌딩 지상 1층 나. 사업종목 : 에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47852), 휴게음식 점(552303) 다. 참여학과 : 반려동물과 라. 에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하여 다 음 각 호의 학교기업을 설치한 다.<개정 2015.6.1., 2020.2.14., 2020.11.23., 2021.5.17.> 1. 가.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336, 탑빌딩 지상 1층 나. 사업종목 : 에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47852), 휴게음 식점(552303) 다. 참여학과 : 반려동물관련학 과	지나친 세부 항목의 간략화

	소매업 및 휴게음식점의 상호는 “서정대학교 부설 애완동물센터(팻인슈카페)”로 한다. 2. 삭제 <2021.5.17.> 3. 가.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호곡로 1310번길 44 1, 2층 나. 사업종목 :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47852) 다. 참여학과 : 반려동물학과 라.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의 상호는 “팻인슈”로 한다. ②삭제 <2015.6.1.> ③총장은 학교기업의 총괄적인 관리 감독권을 가지며 그 관리감독권을 산학협력단장 또는 각 행정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신설 2015.6.1.> ④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 결과를 졸업학점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현장실습 교육은 한 학기 15시간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이를 1학점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5.6.1.> ⑤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5.6.1.>	라.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및 휴게음식점의 상호는 “서정대학교 부설 애완동물센터(팻인슈카페)”로 한다. 2. 삭제 <2021.5.17.> 3. 가.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호곡로 1310번길 44 1, 2층 나. 사업종목 :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47852) 다. 참여학과 : 반려동물관련학과 라.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의 상호는 “팻인슈”로 한다. ②삭제 <2015.6.1.> ③총장은 학교기업의 총괄적인 관리 감독권을 가지며 그 관리감독권을 산학협력단장 또는 각 행정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신설 2015.6.1.> ④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 결과 를 졸업학점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현장실습 교육은 한 학기 15시간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이를 1학점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5.6.1.> ⑤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5.6.1.>	장에학생과 소수집단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근거
--	---	---	-------------------------------------

			수행 등에 있어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등교육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신설 2022.12.1.>	
제1조(시행일)	①이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46조(졸업)의 졸업학점은 2년제 학과는 2023학년도 전기졸업생부터, 3년제학과는 2024학년도 전기졸업생부터, 4년제학과는 2025학년도 전기졸업생부터 적용한다. ③다전공, 융합전공의 전공명은 2021학년도 전기졸업생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조항 이동<2022.12.1.>	①이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46조(졸업)의 졸업학점은 2년제 학과는 2023학년도 전기졸업생부터, 3년제학과는 2024학년도 전기졸업생부터, 4년제학과는 2025학년도 전기졸업생부터 적용한다.	이 학칙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2012.12.4.><개정 2014.2.26., 2015.8.20., 2016.2.29., 2017.9.1., 2022.3.1., 2022.12.1.>	부칙 시행일 명시 개정일 삽입
제1조(시행일)	<신설 2012.12.4.><개정 2014.2.26., 2015.8.20., 2016.2.29., 2017.9.1., 2022.3.1.>	행정학사 사회복지행정학과 복지학사 사회복지학과 교육학사 유아교육학과 식품조리학사 식품조리학과 호텔외식조리학사 호텔외식조리학과 경영학사 경영정보학과, 경영학과 공컴학사 자동차학과, 소방안전관리학과, 스마트자동차학과 미용학사 뷰티아트학과 보건학사 애완동물학과, 반려동물학과 아동청소년학사 아동청소년보육학과 상담아동청소년학사 상담아동청소년학과 사회복지학사 사회복지상담학사 사회복지상담학과 간호학사 간호학과 다문화복지한국어학사 글로벌한국어복지학과 관광학사 호텔관광학과, 호텔항공관광학과 계 19	행정학사 사회복지행정학과 복지학사 사회복지학과 교육학사 유아교육학과 식품조리학사 식품조리학과 호텔외식조리학사 호텔외식조리학과 경영학사 경영정보학과, 경영학과 공컴학사 자동차학과, 소방안전관리학과, 스마트자동차학과 미용학사 뷰티아트학과 보건학사 애완동물학과, 반려동물학과 아동청소년학사 아동청소년보육학과 상담아동청소년학사 상담아동청소년학과 사회복지학사 사회복지상담학사 사회복지상담학과 간호학사 간호학과 다문화복지한국어학사 글로벌한국어복지학과 관광학사 호텔관광학과, 호텔항공관광학과 계 22	학과명칭 변경 및 신규 개설 학과로 인한 학사 학위의 종별 명칭 변경 및 추가
조문 표기 방식 통일				
제 19 조 의 1(입학전)	제19조	제19조의1		

제 22 조 의 1(입학허 가)	제22조	제22조의1		
제 35 조 의 1(수업)	제35조	제35조의1		
제35조의2	제35조2	제35조의2		
제 48 조 의 1(학위수 여)	제48조	제48조의1		
제71조의1	제71조	제71조의1		
제79조의1	제79조	제79조의1		
대학 명칭 표기 방식 통일				
제 1 조 (목 적)	서정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서정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제2조(교육 이념)	본 대학교는	본 대학은		
제3조(명칭)	본 대학교는	본 대학은		
제 4 조 (위 치)	본 대학교는	본 대학은		
제5조(설치 학과 및 입학 정 원)	①본 대학교에	①본 대학에		
제 5 조 의 2 (학사 학위 전 공 심 화 과정의 설 치학과 및 입학정원)	본 대학교에	본 대학에		
제 5 조 의 4 (계 약 에 의 한 학 과 설치)	①본 대학교에	①본 대학에		
제6조(교직 원)	①본 대학교의	①본 대학의		
제 8 조 (조	①본 대학교에는	①본 대학에는		

적)	본 대학교의		
제9조(수업 연한)	본 대학교의		본 대학의
제 32 조 의 1(교육과 정)	⑤우리 대학의		⑤본 대학
제52조(공 개강좌)	①본 대학교		①본 대학
제73조(재 위원회)	①본 대학교		①본 대학
제76조(의 견 제출 및 처리)	①본 대학교		①본 대학
제 79 조 의 1(부속기 관)	①본 대학교		①본 대학
제 79 조 의 2(부설기 관)	①본 대학교		①본 대학
제82조(자 제평가)	①본 대학교		①본 대학
용어 표기 방식 통 일			
제 32 조 의 1(교육과 정)	②각 과별		②학과별
제 32 조 2 (전 공 심 화 과 정 교 육 과 정)	②각 과별		②학과별
남자 표기 방식 통 일			
제 5 조 의 2 (학사 학위 전 공 심 화 과정의 설 치학과 및 입학정원)	2019.10.01. 2014.08.28. 2015.08.20. 2016.02.29	2019.10.1. 2014.8.28. 2015.8.20. 2016.2.29.	

치학과 및 임학정원)	2017.04.27		
	2018.07.10	2017.4.27	
	2019.10.01	2018.7.10	
		2019.10.1.	

신 · 구조문 대비표

규정명: 학칙 시행세칙

조 문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40조(전과 및 편입학생의 학점 인정)	제40조(전과자 및 편입학생의 학점 인정)	제40조(전과 및 편입학생의 학점 인정)	용어의 순화
제1조(시행일)	①이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46조(졸업)의 졸업학점은 2년제학과는 2023학년도 전기졸업생부터, 3년제학과는 2024학년도 전기졸업생부터, 4년제학과는 2025학년도 전기졸업생부터 적용한다. ③다전공, 융합전공의 전공명은 2021학년도 전기졸업생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은 ②삭제<2022.12.1.> ③삭제<2022.12.1.>	학칙으로 이동 변경
제1조(시행일)	①이 학칙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중전의 호텔외식조리과에 소속된 재학생은 2023년 3월1일부터 호텔외식조리학부(호텔조리전공, 식품영양전공)소속으로 보며, 호텔항공관광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23학년도 말까지 졸업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호텔항공관광학부(항공관광전공, 호텔경영전공)소속으로 본다.	이 규정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삭제<2022.12.1.>	학칙으로 이동 변경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칙 개정 기준일 공시

2022 학칙 개정안 공람 후 의견 반영서

	학칙 개정 전 기준 조문(2022.7.1.)	학칙 개정안	의견 반영 수정안	비고
제19조의1(입학전형)	신입학전형은 매 학년도 관련기관에서 정하는 전문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 중 총장이 선발 방법을 병합한 전형에 의해 선발한다. <개정 2008.8.22.> 1. 출신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2.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 3. 대학별 고사 4. 면접고사 5. 실기고사 6.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①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매 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산업체위탁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매 학년도 전문대학 산업체위탁 시행계획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③ 전공심화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매 학년도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시행계획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개정 2022.12.1.>	좌동 좌동 ③ 전공심화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매 학년도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시행계획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개정 2022.12.1.>	변동 없음 변동 없음 어휘 변경
제34조(학점인정)	③전공심화과정 1년 과정 입학생들은 112학점을, 2년 과정 입학생들은 72학점을 인정한다. 단, 입학시 인정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학점은 졸업시까지 반드시 부족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삭제 <2004.3.25.><개정 2012.12.4., 2020.11.23., 2022.3.1.>	③본 대학 평생교육원 및 특별과정, 외부 협약기관 및 산업체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4.13.><개정 2016.2.29., 2022.12.1.>	③전공심화과정 1년 과정 입학생들은 112학점을, 2년 과정 입학생들은 72학점을 인정한다. 단, 입학시 인정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학점은 졸업시까지 반드시 부족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삭제 <2004.3.25.><개정 2012.12.4., 2020.11.23., 2022.3.1.>	기준 조문(2022.7.1.) 유지

	⑧성인학습자가 입학 전 기관,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수행한 직무경험과 학습경험 등이 평가인정을 통해 입증되면 최대 18학점 범위 내에서 특정한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2.29.>	⑧삭제	③본 대학 평생교육원 및 특별과정, 외부 협약기관 및 산업체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학점 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4.13.><개정 2016.2.29., 2022.12.1.>	개정안 수정안의 ③항은 ⑧항으로 이동
--	--	------------	---	-------------------------------------

수신자 수신처참조

(경유)

제 목 학칙 및 시행세칙 등 규정 개정 의견 반영의 건

1. 관련 근거 : 학칙 제16장 학칙 제·개정절차,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등 규정 개정 공람 공고(입학 학사처-2022-1324(2022.10.26))
2. 학칙 개정안 의견서는 2022년 11월 07일 교무위원회 검토 받은내용입니다.
3.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1. 학칙개정안 의견서 1부.

2. 학칙개정안 공람후 의견반영서 1부. 끝.

입학학사처장

수신처: 국제교류처 외 29

직원	기안11/11 김정섭	국제학사과장	검토11/11 박정화	입학학사처장	결재11/14 김행영
협조자					
수신	주임	전결11/15 김다솜			
시행	입학학사처-2022-1417	(2022.11.14)	접수	기획조정실-2022-5532	(2022.11.15)
(우) 11429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서정로 27			www.seojeong.ac.kr	
Tel 031-860-5009	/Fax 031-859-7802	/E-mail kjs6625@seojeong.ac.kr		/ 공개	

학칙개정안 의견서

소 속	학사학위지원센터
성 명	김석준
의견제출 학칙조항	제19조의1(입학전형)
• 현행 신입학전형은 매 학년도 관련기관에서 정하는 전문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 중 총장이 선발방법을 병합한 전형에 의해 선발한다. 1. 출신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자료 2.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 3. 대학별고사 4. 면접고사 5. 실기고사 6.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개정 ①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매 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산업체위탁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매 학년도 전문대학 산업체위탁 시행계획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③ 전공심화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매 학년도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시행계획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의견 학칙 개정을 위한 신규조문대비표 검토 중, 3항의 ‘...전공심화과정의 시행계획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라는 내용을 확인. 학사학위지원센터에서는 교육부의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기본계획’의 기준에 따라 매 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 및 운영, 학사관리, 입학자격등을 진행하는 관계로 3항의 ‘전공심화과정의 시행계획’을 ‘전공심화과정 기본계획’으로 정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2022. 11. 01. 성명: 김 석 준 	

학칙개정안 의견서

소 속	학사학위지원센터
성 명	김석준
의견제출 학칙조항	제34조(학점인정) 3
• 현행 ③전공심화과정 1년 과정 입학생들은 112학점을, 2년 과정 입학생들은 72학점을 인정한다. 단, 입학시 인정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학점은 졸업시까지 반드시 부족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개정 ③본 대학 평생교육원 및 특별과정, 외부 협약기관 및 산업체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의견 학사학위지원센터는 학칙 제46조(졸업) ‘②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은 2년제 72학점 이상, 3년제 112학점 이상, 4년제 132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본 대학의 전공심화과정 1년제 학과는 20학점, 2년제 학과는 6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에 따라 전문학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최소학점을 전공심화과정 입학시 인정학점과 동일하게 보며, 전문학사과정과 전공심화과정 총 취득학점이 4년제와 동일하게 132학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전공심화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132학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대학별로 졸업학점이 상이한 관계로 현행 조항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봄으로써 현행 조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2022. 11. 01. 성명: 김 석 준 	

4. 회의 사진

